

1880년대 朝士視察團의 西歐法制 인식과 초기 開化運動

- 漢城旬報를 통한 啓蒙 活動을 중심으로 -

元 載 淵*

차 례

I. 머리말

II. 朝士視察團의 西歐法制 인식

1. 嚴世永의 인식
2. 기타 인사들의 인식

III. 漢城旬報를 통한 西歐法制 홍보

1. 西歐의 政治體制 및 基本權에 대한 인식과 홍보
2. 刑政 인식과 刑事法 개정론

IV. 맺음말

* 서울大 法學21研究團 韓國法研究센터 研究員, 文學博士

I. 머리말

대체로 한국 법사학회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을 한국 근대법제의 시점으로 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화, 근대화 정책이 실시된 근대사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다.¹⁾ 동시에 이러한 법제의 변혁은 개항을 전후한 시점부터 만국공법(萬國公法) 등 서구 법제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과 1880년대 초반 의욕적인 개화정책의 진행에 따라 서구법제에 대한 개화인사들의 개인적 자각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변혁의 기초가 마련되고,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²⁾ 그런데 여기서 갑오개혁 시에 단행된 법제의 변화가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자율적인 법제개혁의 시도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 정치·사상사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³⁾ 그리하여 18~19세기 조선왕조 나름의 법제개혁의 움직임이⁴⁾ ‘문호개방’이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어 근대법제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시적(通時的)인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 영·정조대 이래의 계속된 인권신장과 법제개선의 움직임이 결국 ‘후기 실학자들’과 ‘초기 개화파들’의 서구법제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이에 대한 점진적인 도입의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인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⁵⁾ 본고는 1881년 朝土視察團의 이름으로 명치 일본(明治日本)에 파견된 수십 명의 조선 지식인이 서구문

1) 박병호, 『개화기의 법제』 『한국학』 7(중앙대 영신아카데미, 1975), 13면; 최종고, 『한국 근대법의 형성』 『한국문화』 15, 1994(『全訂新版 韓國法思想史』(서울대출판부, 2001) 209면에서 재인용); 정공식, 『한국근대법사고』(박영사, 2002), 42면.

2) 최종고, 『開化期の 法思想』 『全訂新版 韓國法思想史』(서울대출판부, 2001), 209~287면;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박영사, 1981), 15~34면 등 참고.

3) 이러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許東賢, 『1881년 朝土視察團의 明治日本 司法制度 이해』 『진단학보』 84집(진단학회, 1997)은 본고의 작성에 여러모로 자극을 준 개척적인 논문으로 평가된다.

4) 박병호, 『近世의 法과 法思想』(진원, 1996) 참고.

5) 이러한 전제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조선후기 西洋認識의 변천과 對外開放論』(2000. 8, 서울대국사학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전제와는 달리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박영사, 1981), 57~98면에서는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단절적 측면을 강조하여, 서구법의 수용을 전통법과의 단절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물과 법제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의 눈을 뜨는 시점부터, 이를 당시의 지식인 사회가 전통적인 법관념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사시찰단이 남긴 각종 보고기록을 검토하면서 1880년대 초반의 ‘한성순보(漢城旬報)’와 후반의 ‘한성주보(漢城周報)’ 등 개화언론을 통한 계몽활동 및 개화인사들의 개별적인 저술활동 등을 점검해 봄으로써 1894년 갑오경장 이후의 근대적 법제개혁으로 이어지는 개화 지식인의 법관념과 법사상의 저류(底流)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朝士視察團의 西歐法制 인식

1. 嚴世永(1831~1900, 호 凡齋)의 인식

嚴世永은 1881년(고종18, 辛巳年) 4월부터 윤7월까지 조선국왕 고종(高宗)의 밀명을 받고 동래암행어사(東萊暗行御史)의 직책을 띤 채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총 64명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 중의 한 사람으로, 이 시찰단을 속칭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이라고도 부른다.⁶⁾ 이 중에서 엄세영은 朴定陽(1841~1904)·姜文馨(1831~?)·金鏞元(1842~?)·閔種默(1835~1916)·沈相學(1845~?)·魚允中(1848~1896)·趙秉稷(1833~?)·趙準永(1833~1886)·李元會(1827~?)·李鏞永(1835~1907)·洪英植(1855~1884) 등과 함께 12명의 朝士 중에 끼여 있었다. 그는 승문관·홍문관·사헌부 등의 요직을 거쳐 經筵에 참여하기도 했고 동지사 서장관으로 北京에 다녀온 경험도 있으며,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두루 겸비한 개화 관료였다.⁷⁾ 그는 1881년 4월 28일 東京에 도착하여 前司法卿 田中不二麿(타나카 후지마로, 1845~1909) 및 司法大輔 玉乃世履(타마노 세이리, 1825~1886) 등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6)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역사학보』 27집(역사학회, 1965); 허동현, 『1881년 朝鮮 朝士 日本視察團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52집(한국사연구회, 1986); 허동현, 『1881년 朝士視察團의 明治 日本 政治制度 理解』 『한국사연구』 86집(한국사연구회, 1994); 허동현, 『1881년 朝士視察團의 활동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66집(국사편찬위원회, 1995); 허동현, 『1881년 朝士 魚允中の 日本 經濟政策 認識』 『한국사연구』 93집(한국사연구회, 1996); 허동현, 『1881년 朝士視察團의 明治 日本 司法制度 이해 - 嚴世永의 《司法省視察記》와 《聞見事件》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84집(진단학회, 1997) 등이 있다.

7) 허동현, 앞의 논문(1997), 136~137면 참조.

명치정부가 추진해온 사법성의 사무와 제반 개혁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동년 윤7월 1일 長崎港을 출항하여 귀국하였다. 귀국 후 약 2개월 동안 그는 일본에서 견문한 바를 『司法省視察記』 7권과 『聞見事件』 1권으로 정리하여 고종에게 헌정했다. 그의 『司法省視察記』 제1권에는 『司法省職制事務章程』·『大審院職制』·『上等裁判所職制』·『地方裁判所職制』·『東京裁判所支廳管轄區分及取扱假規則』·『區裁判所假規則』·『糾問判事職務假規則』·『法學寄宿生徒規則』·『司法警察假規則』·『警察規則附錄』·『警視廳處務規則章程』·『府縣官職制』·『元老院職制章程』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제 기관의 직제와 장정류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 『司法省視察記』 제2권에는 1882년 시행예정인 刑法, 제3권에는 『治罪法』, 제4권에는 『訴訟法』, 제5권에는 『監獄則』, 제6권에는 『新律綱領』 및 『改定律例撮要』, 제7권에는 『改正律例』가 실려 있다. 이상의 보고서들을 통하여 엄세영은 三權分立에 따른 司法權의 독립과, 강력한 권한을 지닌 司法卿 중심의 전문적·효율적 사법행정 체계 및 彈劾主義에 입각한 형사소송 절차, 법관양성 제도 등이 明治維新 以後 일본이 받아들인 서구법제(西歐法制)의 영향으로 파악하였다.⁸⁾ 그는 또한 일본의 형법제정 정신이 예의나 도덕 등 規範의 실현이 아닌 正義의 실현에 있음을 인지하면서, 그동안 法治가 아닌 禮治의 대상으로 여겨져온 士·華族들도 모두 同等權에 입각해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서구적 법사상의 실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님을 파악하였다.⁹⁾ 그런데 이같은 일본의 법제 개정에 대해 엄세영은 어떠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그는 일본의 개정 刑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옛 章程을 일체 새롭게 한 것은 온전히 泰西에서 본받은 것이다. 또한 萬國公法을 취하고 裁判制度를 斟酌하여 모두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여 지극히 타당함에 이르도록 힘썼으니, 처음에는 192條로 만들었다가, 또 變改하여 318條로 하였다. 대체로 拷問과 刑訊을 폐하고 懲役을 실시하며 (법률상의) 同等權을 설정한 것이 그 設法의 大綱이다.¹⁰⁾

8) 허동현, 앞의 글(1997), 148~149면. 그러나 필자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명치일본의 3권분립 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 등으로 분립된 서구의 그것과는 명칭이나 그 내용 등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변형적인 권력분립체제”라고 할 수 있다.

9) 위와 같은 곳.

10) 『日本聞見事件草』(奎7769-1); 日人之更變舊程 一切從新 全倣乎泰西 而又取萬國公法 裁制斟酌 纖悉微密 要歸至當 始焉定爲一百九十二條 又變爲三百十八條 盖廢拷訊·行懲役·同等權 是其設法之大綱也(*國學資料院 影印本, 『朝士視察團資料集』 제12권, 419면).

그는 人身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酷刑을 폐하고 懲役刑을 실시하는 것이 금일 일본 형법 제정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이는 漢·唐代的 古法에 符合되는 것으로 파악하여¹¹⁾ 일단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징역형과 함께 채택된 罰金刑과 代言[변호사 제도] 등에 대해서도 三代之 虞와 周代의 良法을 본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일본의 법은 巡察制度 및 保健衛生制度 등의 導入과 함께, 權力者가 백성을 억압하는 ‘刑名法術之類’이 아니라 爲政者가 국민과 맺은 ‘治國之契約’이 되었다¹²⁾고 好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구법제의 성급한 일방적 도입으로 말미암아 古法의 治用에 어긋나버린 점도 있다고 비평함으로써,¹³⁾ 그 자신은 서구법제의 신중한 검토와 점진적인 도입을 지향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일본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후 복명과정(復命過程) 등을 통하여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고종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1880년대 초반의 제도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 엄세영이 귀국한 지 석달 후인 1881년 11월 9일에 단행된 統理機務衙門의 기구 개편시에 예하 7司 중에 律例司가 설치되고,¹⁴⁾ 그 자신도 동월 21일에 滬萊事 堂上經理事에 임명됨으로써¹⁵⁾ 그가 일본에서 견문한 서구법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일시적이나마 마련되었던 점에서 확인된다.¹⁶⁾ 그러나 법제개혁에 대한 엄세영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와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등의 정치적 격란을 겪으면서 滬萊사는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이내 폐지되고 말았다.¹⁷⁾

11) 위와 같은 곳; 自然符合於古法 其曰懲役者 漢之城朝·唐之謫戍之例也.

12) 같은 곳; 其曰贖圓者 虞之贖金 周之罰鍰之制也 倣司寇詰奸之規 而有警察巡查焉 取國人與罪之意 而有代言仿聽焉 凡諸保民康健衛生 愛人靡不用其極 其所謂法者 非刑名法術之類也 卽所以治國之契約也.

13) 같은 곳; 夫刑者 輔教化齊民俗之一具也 用之於不得已 而民不以爲酷行之… 顧未嘗並廢拷訊之法也 豈古之人之慮 不及此耶 以謂春生秋肅 陽舒陰慘 不容偏廢故也 今不分輕重 不問巨細 一施之懲役 則異乎古之治用….

14) 『高宗實錄』 고종18년 11월 9일.

15) 『日省錄』 高宗18年 辛巳11月21日; 差下衙門各司堂上… 沈舜澤·嚴世永 并律例司堂上差下.

16) 이러한 엄세영의 활약에 대해 허동현은, “엄세영이 남긴 문헌들이 활자화되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개화·자강을 열망하고 있던 개화파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종래의 고문·酷刑 위주의 行刑制度나 행정권에 종속된 司法制度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였으리라고 본다”고 평가하였다. 허동현, 앞의 글(1997), 147면.

17) 통리기무아문의 설치와 폐지에 관해서는 邊勝雄, 『제도의 개혁』, 『한국사』 제38집(개화와 수구의 갈등, 국사편찬위원회, 1999), 147~153면 참고.

2. 기타 개화파 인사들의 인식

1881년 봄에 일본으로 파견된 조사시찰단의 일원들 중에는 엄세영 등 12명의 정식 조사(朝士) 외에도 이들 조사를 동행하였던 유학생 등 상당수의 수행원들이 있었고 이 중에는 어윤중을 수행하였던 兪吉濬(1856~1914, 矩堂)·尹致昊(1865~1945, 佐翁) 등과 박정양을 수행하였던 李商在(1850~1927, 月南) 등 훗날 갑오·을미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한 쟁쟁한 개화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¹⁸⁾ 이렇게 조사시찰단의 派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개화당의 지도자 金玉筠(1851~1894, 古筠)은 1881년 12월 徐光範(1859~?, 緯山) 등과 함께 직접 일본을 방문하고 井上馨(이노우에 카로우),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정계의 거물들과 회담을 가지면서 일본의 문명개화상(文明開化像)을 직접 확인하고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일본측과 난후처리 문제로 朴泳孝(1861~1939, 春臯)가 사절로 파견되어, 함께 간 金晩植(1834~1900, 翠堂), 김옥균, 서광범, 閔泳翊(1860~1914, 芸楣) 등과 함께 직접 명치일본의 실상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개화파 인사들은 개화정책의 추진속도 등을 둘러싼 그 이념과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근대화한 일본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서구법제에 대한 다소간의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유길준은 1881년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개화당의 주요인물인 福澤諭吉(후쿠자와 유키치)의 慶應義塾에서 기거하면서 후쿠자와의 문명개화론과 서구법 사상에 대하여 공부하여, 로크(J.Locke)나 루소(J.J.Rousseau) 등의 天賦人權說을 이해할 수 있었다.¹⁹⁾ 그는 1890년대 전반에 출간한 그의 저서 『西遊見聞』의 제4편 ‘人民의 權利’에서 “自由와 通義[right, 權利]는 人生의 빼앗을 수도 꺾을 수도 없는 권리이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保有하여 人世의 즐거움을 향유할 것이다”²⁰⁾라고 하여 천부의 인권과 만민평등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人民主權과 抵抗

18) 金源模, 『신문명의 도입』 『한국사』 제38책(국사편찬위원회, 1999), 110면 참고.

19) 최종고, 앞의 책(2001), 243~246면; 전봉덕, 『서유견문과 유길준의 법사상』 『韓國近代法思想史』, 188~252면; 李光麟, 『유길준의 개화사상』 『역사학보』 75·76합집(1977) 및 『韓國開化思想史研究』(일조각, 1978), 45~92면.

20) 전봉덕, 앞의 책(1981), 84~85면에서 재인용.

權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人權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²¹⁾ 일본과 미국유람 후 귀국한 1885년부터 1889년까지의 윤휴생활의 결과 정치적 좌절감에서 오는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대외적인 언론계몽활동은 갑오경장 이후의 시기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였다.

윤치호는 명치일본의 법제를 직접 견문한 후 초대 주한미공사 푸트(Lucius H. Foote, 福德)의 통역관으로 있으면서 국왕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利를 추구하여 경장(更張)·진작(振作)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여 옛법을 폐기하고 신법을 제정한 명치일본의 근대화가 구법을 고수하는 청국보다 훨씬 문명하고 부강하다고 역설하였다.²²⁾

한편 1870년대에 ‘충의계’(忠義契)라는 개화파의 비밀조직을 만들고 1884년에는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던 김옥균은 1882년 임오군란의 뒷수습을 위해 渡日하였을 때 작성한 『治道略論』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최인의 징역사는 법이 古典에 기재되어 있고, 지금 해외의 나라들이 모두 그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선만이 옛 성인의 정치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결함이다. 治道와 巡檢과 懲役의 제도는 鼎足の 형태와 같아서 하나만 빠져도 안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刑政을 의논하건대, 법이 오래되어 문란해져서 생명을 겁박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등 그 피해가 전 지역에 미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허물치 않는다. 하나의 釘錐를 훔치거나 하나의 豪強에게 욕을 하면 먼 곳에 귀양을 보내니 인명을 초개같이 여겨서 和氣를 손상시킴이 극에 달하였다. 仁人君子의 마음이 어찌 통탄스럽고 슬프지 않겠는가? 堯舜 시대에 어떤 백성이 교화를 어겼기에 법관을 두었으며, 贖金의 법을 두었겠는가? 이것이 懲役法の 유래이다. 그러므로 새로 법률을 정하여 가벼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몰아다가 일을 시켜 스스로 속죄하게 하되, 이는 반드시 聖裁로써 결단을 지어야 비로소 효력을 거둘 수 있으며, 法律學이 일어난 다음에야 庶務가 곧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²³⁾

위 기사는 당시의 개화언론이었던 한성순보 제26호에 실려서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의 개화 지식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었는데 그 요지는 “治道가 개화하는 기초작업이라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警察制度和 懲役刑의

21) 전봉덕, 위와 같은 곳; 최종고 앞의 글(2001)에서는 그가 비록 천부인권론을 주장하였지만 인민주권사상이나 개인주의적 법사상에는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권을 강조하는 등 ‘국가주의적’ 법사상으로 회귀하였는데, 이는 명치 헌법 제정 전후의 公法思想에서 영향을 받은 ‘법이론의 轉回’ 라고 평가하였다.

22) 최종고, 앞의 책(1982), 77~78면.

23) 『漢城旬報』 제26호, 甲申 閏5월11일(양력 1884년 7월 3일)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번역본, 498~501면.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징역형과 벌금제도 등을 통해서 과거의 酷刑을 폐지하고 인민을 교화시켜야 나라가 富強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같은 김옥균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엄세영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다만 엄세영이 서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 등에 대해서 다 인정하면서도 그 실행에 있어서는 다소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에 반하여, 김옥균은 개화당의 지도자답게 국왕의 호응을 촉구하는 등 과감한 실행을 주장하고 있음이 다르다.²⁴⁾ 이러한 김옥균의 開化 改革論은 갑신정변 이전까지는 분명 국왕을 비롯하여 조정내 강·온 개화관료들로부터 비판적 견제와 함께 일정한 지지도 함께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설이 있고 난 후 불과 몇 달 후인 1884년 12월 초에 일으킨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의 정책은 고종과 동도서기적(東道西器的) 온건개화를 지향했던 국왕의 측근 관료들에 의해 철저히 배격당했을 것이므로 그의 주장이 1880년대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논설이 그와 뜻을 같이했던 급진개화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여론(輿論)을 형성하여 1894년 갑오경장 이후의 법제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²⁵⁾ 한편 김옥균과 함께 개화당을 이끌었던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박영효도 여러 차례 국왕에게 올린 상소들을 통해서 그의 법률사상을 피력하였다. 그는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하였다가, 1894년 갑오개혁시에는 사면을 받고 귀국하여 제2차 김홍집 내각에 참여하였으므로, 실제로 조선왕조의 典章法度を 근대적 법제로 개혁하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의 법사상은 1888년 2월 24일 일본에서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 『興法紀安民國』에서 “酷刑을 가하여 仁을 傷하고, 무고한 자를 억지로 처벌하여 義를 상하고, 법률을 유린하여 信을 상실하여 인민을 압제하는 것은 야만국의 미개한 정치”라고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형벌사상은 앞서 『치도약론』에서 제시된 김옥균의 刑政思想과 상호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24) 최종고는 김옥균의 근대법사상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입헌군주국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池運永事件糾彈疏』 등을 통하여 양반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人民平等思想을 주장하였고, 위생이나 형벌을 설명하면서도 생명의 중요성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주장하였으며, 형벌에 대해서는 刑량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私刑의 금지를 촉구하는 등 ‘罪刑法定主義’와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종고, 앞의 책(2001), 267~268면.

25)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들의 1880년대 전반 언론계몽활동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3장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26) 박영효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최종고 앞의 책(2001), 274~278면 및 전봉덕 앞의 책

한편 엄세영과 함께 1881년 일본으로 파견된 조사시찰단 내 다른 인사들이 남긴 明治日本の 서구법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도 다수 존재한다. 1881년 일본의 外務省을 시찰하고 그 견문결과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승지 閔種默은 일본 정치의 변화를 立君獨裁에서 立君民同(治)法으로의 전환으로 보고 일본 국민의 自由之權이 크게 신장하여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파악하였다.²⁷⁾ 그는 또한 일본의 衛生之法과 軍制, 刑法 등은 프랑스나 러시아보다도 독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으며,²⁸⁾ 각국의 政體를 다음과 같이 4개의 部類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설파하였다.

각국의 정체는 동일하지 않으니, 그 첫째는 君民共治로서 프랑스의 경우이며, 그 둘째는 立君獨裁로서 러시아의 경우이며, 그 셋째는 貴族政治로서 영국의 경우이고, 그 넷째는 共和政治로서 미국의 경우이다. 形勢로서 보면 가장 강한 나라는 러시아이며, 人情으로써 보면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아메리카]이며, 올바른[正]으로서 보면 가장 강한 나라가 영국이다. 일본이 大審院을 설치한 것은 곧 영국의 審理(院)이고, 元老院도 영국의 上院이며, 府會議은 영국의 下院이니, 영국의 정치는 君權을 취하여 民權으로서 (곧바로) 대치하지 않고, 상원과 하원을 설치하여 그 중간을 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영국을 많이 모방하였다고 한다.²⁹⁾

민중목은 “정치일본의 법제개혁이 서구의 刑政體制인 독일식을 많이 취용했으나, 정치체제는 영국과 거의 흡사하여 君權과 民權이 적당한 선에서 균형을 이루는 議會制度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다른 조사인 박정양은 內務省과 農商務省을 시찰하였는데, 민중목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치체제가 영국의 상하원 議會制度를 많이 모방하였음을 밝히면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³⁰⁾ 한편 太政官 이하各省의 官吏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원로원과 대심원의 경우, 이곳에서 발언하는 사람의 貴·賤을 따지지 않고 다만 그 법을 취하는 것의 가부만 논하니 이것이 바로 立法의 大

(1981), 80~91면 참고.

27) 政體自古 立君獨裁 自戊辰以後 大改憲法 漸以立君民同法之基…是謂自由之權也, 국학자료원 영인본 제12권, 101면, 『見聞事件』 규1311-2.

28) 衛生之法 及軍制·刑法 多倣於德國; 同上 109면.

29) 위와 같은 곳 110면; 各國政體不一 一曰 君民共治 佛國也, 二曰 立君獨裁 魯國也, 三曰 貴族政治 英國也, 四曰 共和政治 亞國也, 以勢最者魯國也 以情最者亞國也 以正最者英國也, 日本之設大審院 卽英之審理也 元老院卽英之上院也 府會議如英之下院 英國政治 取以君權 不以民權 設上院下院而得其中也 故日本多倣之云.

30) 국학자료원 영인본 제12권, 174~179면, 『日本國聞見條件』 규2575; 現今雖曰君主專治 一遵西洋之制 有立法·行政·司法之稱 倣英國上下之議院 而設元老院·大審院.

要라고 하였다.³¹⁾ 한편 그는 府縣會를 미국의 共和政治에서 모방한 것이라 파악하고 各府 各省마다 신문지, 잡지 등의 사사로운 刊行과 賣買를 허락하여 비록 궁벽한 시골이라도 두루 전달되며, 立法 활동도 이러한 신문지상의 의견수렴과 홍보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하여 법제개혁에 있어서 신문 등 근대적 언론매체를 통해 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³²⁾ 또한 이러한 民意收斂制度의 결과 백성들이 부민회에 모여 國會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君民共治를 주창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불허함으로써 조야에 의론이 분분하다고 하여, 서구식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일본 민중의 열망을 사실적으로 보고하였다.³³⁾ 박정양과 민종묵이 관찰한 일본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이들 개화파 朝士들이 귀국한 후에 곧바로 간행하게 되는 『한성순보』의 지면을 통해서 세계각국의 다양한 정치형태를 소개함으로써 단순한 西歐認識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계몽활동으로 이어졌다.³⁴⁾ 앞에서 언급한 민종묵, 박정양 외에도 조사시찰단 참가인사들이 일본의 서구법제 도입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들 조사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拷訊 등 酷刑을 없애고 懲役刑을 導入한 것이 그 요체이다”라는 식으로 증언하고 있다.³⁵⁾

III. 漢城旬報를 통한 西歐法制 홍보

1. 西歐의 政治體制 및 基本權에 대한 인식과 홍보

1883년(고종20년) 10월에 창간된 근대적 신문인 漢城旬報와 1886년 1월에 창간된 漢城周報는 우리나라 新聞史 뿐만 아니라 開化運動史에 있어서도

31) 上同; 凡有一法 無論官民 必就大審院而發議 自大審院 進于太政官 太政官付於元老院 而會集各省官吏 不計言者之貴賤 只取其法之可否 有議長者 專管議席 雖一法一令 必爲議決於會議後施行 此是立法之大要.

32) 上同; 府縣會 此日人所云 倣美國之共和政治也 且於東京及各府各縣 廣設新聞紙雜誌等 許其私刊私賣 雖僻巷窮村 以郵便遍傳 無論某人 如有意見之可以立法者 則登諸新聞 互相傳播 此則日人所謂博採見聞者.

33) 上同; 聞於野論 則曰君民共治 聞於朝士 則曰 自府縣會 每請國會 而若許國會 則便同君民共治 故姑不許之云云.

34)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다음 장(第三章)에서 언급함.

35) 이현영, 『聞見事件』(규1311-3) 위 국학자료원 영인본 제12권, 506면; 司法省之廢拷訊 而行懲役者 一從泰西國之政法; 조준영, 『日本聞見事件草』 규7769-2, 刑法無杖配之律 拘繫囹圄 使之懲役於公 年限之久近 隨罪之輕重 此亦西法 而律令 尙無一定之例是白齊.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³⁶⁾ 왜냐하면 이 두 신문은 1880년대의 조선을 선진 文明開化國으로 이끌기 위한 언론계몽활동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성순보가 당시 漢文을 이해하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얼마만큼의 관심을 끌고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시사가 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타고난 睿智와 宏達한 규모로써 많은 나라들과 國交를 通和하시고, 統理衙門에 명하시어 博文局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內政을 기록하고 外報를 번역하여 나라 안에 頒示하는 동시에 온 천하에 두루 반포하게 하시니, 이는 안으로 백성을 敎化하고 밖으로는 外侮를 막고 전쟁을 없앨 수 있는 훌륭한 방책이었다. 10일에 한 편씩을 펴냈으므로 漢城旬報라고 이름하였으니, “나를 아는 것이 적을 아는 것이다”고 한 옛 사람의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높고 낮은 官民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더니, 甲申政變이 일어나 博文局이 철폐되고 旬報가 간행되지 않게 되자, 상하 관민이 모두 말하기를 “사람의 情은 보는 바에 따라 옮겨감이 참으로 심한 것이로다. 과거 旬報가 간행되지 않았을 적에는 불편한 것을 모르고 지냈더니, 한성순보가 간행되다가 중단되니 겨우 띄었던耳目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하며 모든 사람이 간행을 바라고 폐간을 바라지 않았다. 임금께서는 이런 실상을 살펴 아시고 통리아문에 명하시어 다시 박문국의 설치에 대한 可否를 논하게 하시니, 모두들 “다시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 공정을 단축하여 7일에 한 편씩 펴내기로 하고 旬報란 이름을 周報로 개칭하니, … 이 일은 위로 聖意를 받들고, 아래로 輿論에 따른 것이다.³⁷⁾

이상의 언급을 통해 당시 한성순보가 都下와 近京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지식정보 전달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여론형성에도 일정한 몫을 차지할 정도로 상하 관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인 사회의 耳目의 역할을 다하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였기에 이러한 開化新聞을 통해 조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이를 널리 지상을 통해 소개하고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개화여론의 형성층, 즉 한성순보의 독자층은 그 수요가 얼마나 되었을까? 한성순보의 한 부 값은 당시 동전으로 50전(錢)이었다. 이를 그 당시의 물가로 환산해보면 대략 쌀 한되 값(1兩 남짓)과 북어포 2束(1兩 정도) 값의 절반 가격에 해당된다.³⁸⁾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서울의 웬만한 사대부들은 그다

36) 이광린,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一考察』, 『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60면(일조각, 1995).

37) 漢城周報 제1호 祖先開國494年 乙酉12월21일(*양력 1886년 1월 25일), 앞의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영인본, 713면.

38) 漢城旬報 제3호(1883년 11월 20일) 市直探報[44],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번역본, 29~30면.

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한성순보를 발행하던 박문국이 남부 저동(苧洞, 지금의 명동성당 정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그 일대에 사는 사대부 계층은 물론이고 한문(漢文)을 조금 아는 중인이나 평민들의 상당수도 이 한성순보를 구독하여 열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성순보는 서울 일대에만 보급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한성순보는 일차적으로 간행되면 승정원과 시강원을 통해 국왕과 왕세자에게 진상되었으며, 정부 각 아문은 물론이고 팔도사도(八道四都)와 전국의 군현단위 까지도 보급되어 각 군현에서는 서울에 머무르던 경저리(京邸吏)들이 그 운송과 요금의 징수를 담당하였다.³⁹⁾ 그런데 이러한 군현에는 여러 부씩 배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큰 고을은 한달 구독료가 10냥이었고, 작은 군현은 6냥이었다고 하므로 한달에 세 번 발행된다고 볼 때 대략 한 고을에 적어도 4~6부 정도가 배달된 셈이다.⁴⁰⁾ 당시 전국의 군현의 수가 400여 개에 달한다고 보면, 한성순보가 지방으로 배달되는 것만도 줄잡아 2,000부 이상이 되고 서울 일대에 배포되는 숫자를 그 절반 정도로만 잡아도 모두 3,000부 전후의 발행부수가 예상된다. 그런데 한성순보는 무려 18면에 달하므로 요즘식으로 보면 주간지 정도의 부피에 해당되는데, 요즘과 비교하여 종이가 귀하던 당시에 그 발행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박문국은 구독료 외에도 처음부터 통리아문으로부터 특정한 항목의 조세(租稅)를 고정수입원으로 확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신문값을 아예 납입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군현이 늘어났으며, 이를 거두러 다니는 경저리들의 중간 농간까지 겹쳐서 ‘주보채’(周報債)를 둘러싼 말썽이 많았다고 한다. 결국 한성주보가 개간된지 약 2년 반 만인 1888년 7월에 한성주보도 마침내 폐간되고 마는데 주된 원인이 재정난이라고 했으니, 저간의 사정이 어떠했을 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⁴¹⁾

이상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역할은 단순한 뉴스 전달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1880년대 서울 근방 개화지식인과 중인, 서민층 및 전국 각지의 한문을 해독하는 지식인 관료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화신문에 실린 기사와 논설들은 1880년대 개화정책의 방향과 주안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었으니, 한성순보가 西歐의 정치제도와 法制를 광범위하게 소개한 것은

39) 漢城旬報 제1호(1883년 10월 31일) 社告[20],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번역본, 12면.

40) 이광린, 앞의 책(1995), 76~77, 94~100면.

41) 위와 같음.

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선택적 분별과 시비를 가리는 공론형성(公論形成)의 장을 마련해준 것이었으며, 그 법제의 도입을 위한 準備作業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지하듯이 漢城旬報는 1881년부터 1883년까지 渡日하여 明治日本의 근대적 문물제도를 직접 시찰한 박영효, 김옥균 등 이른바 ‘變法更張’을 추구하던 급진 개화당 인사들이 한편으로 고종의 윤허를 받아내고, 東道西器的 온건개화를 추구하던 민씨 측 인사였던 金晩植 등 博文局 책임자 및 張博·吳容默·金基俊 등 한성순보의 편집실무진 등과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꾸자와 유기치[福澤諭吉] 등 일본 개화파의 도움을 받아 후꾸자와의 제자였던 이노우에 가꾸고로우[井上角五郎] 등 일본인 인쇄기술자의 지원하에 간행해 낸 신문이다.⁴²⁾ 그러므로 여기에 실린 서구의 법제와 정치체제 등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은 모두 일본을 통한 문명개화를 꿈꾸던 개화당 인사들의 정책적 의도가 직접, 간접으로 스며들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한성순보의 편집실무진이었던 장박·오용묵과 한성주보의 단계에 와서 새로 실무진으로 보강된 玄暎運 등은 갑오경장 이후 구한말의 근대적 입법활동(立法活動)에 직접 참여하였는데,⁴³⁾ 이러한 사실은 1880년대 한성순보, 한성주보 단계의 언론계몽 활동 경험들이 10년 후 본격적인 서구법제 도입과 근대적 입법활동을 전개할 때에 그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말해준다.

한성순보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치형태에 대한 언급들이 많다. 특히 구라파의 議會制度和 미국의 共和政治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자주 눈에 띄는데,⁴⁴⁾ 그 대표적인 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④ 정치면은 瑞西[스위스]와 프랑스가 共和政治를 하고, 러시아와 터키는 君主政治를 하며, 기타 (유럽의) 각국은 모두 君主와 國民이 함께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전국 국민으로 하여금 議員을 선거하게 하여 모두 政府에 모이게 하여 法律을 의정하는데 이를 民會라고 한다. … 西洋의 富強은 民會에서 나온다는 말이 결코 근거없는 말이 아니다.⁴⁵⁾

42) 이광린, 앞의 책(1995), 60~65면 참고.

43) 정궁식, 앞의 책, 97면.

44) 구체적으로 유럽의 議會制度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본문에서 인용한 기사 ㉠외에도 漢城旬報 제11호 甲申 1월11일(*양력 1884년 2월 7일) 영인본, 194면 및 同 제10호 甲申 1월3일(*양력 1884년 1월 30일) 영인본, 166면 등을 들 수 있고, 美國의 대통령제 共和政治의 장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인용한 기사 ㉠외에도, 同 제3호 癸未 10월 21일(*양력 1883년 11월 20일) 영인본, 39~40면, 同 제5호 癸未 11월 10일(*양력 1883년 12월 9일) 영인본, 70~71면 등을 들 수 있다.

45) 漢城旬報 제2호 癸未 10월11일(*양력 1883년 11월 10일) 앞의 영인본, 26면.

⑥ 美國의 나라됨이 … 인재를 民選에 의하여 뽑고 정치와 法律을 衆議에 의하여 결정하여, 국가의 大權을 국민의 회의에 돌아가게 하여 君主가 專制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언제나 지극히 공평한 것으로 근본을 삼음으로써 모든 옛날의 캐캐묵은 풍습을 깨끗하게 쓸어 없애버렸다. 이때부터 몇 세대가 지나도록 이 법을 그대로 지켰으며, 누구도 감히 바꾸려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는 날로 부강해졌으며, 국민은 날로 開明前進하여 그 번성함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였다.⁴⁶⁾

이처럼 한성순보가 歐·美 各國의 議會제도와 이에 입각한 君民共治 또는 共和政治를 자주 소개한 것은 그만큼 그 집필진이었던 개화인사들의 관심이 이러한 정치체제에 쏠려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동시에 그것은 한성순보를 읽는 지식인 대중으로 하여금 이들 서구의 정치제도에 대해 선망을 갖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1881년 明治日本을 시찰하고 온 朝士 박정양은 일본에서의 府縣會(일종의 民會, 議會)와 이를 통한 君民同治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열기를 확인해 주었는데, 이러한 대목은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시찰하고 귀국한 개화파 인사들이 한성순보를 통해 서구의 정치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명확히 드러내 준다. 서구정치제도에 대한 이같은 選好는 그러한 체제의 법적 기초에 대한 언급으로도 연결된다. 한성순보에는 여러 번 西歐法制의 기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상고하건대, 서양각국에서 행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기초는 나라를 다스리는 主權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는 것이다. 그 근본원인은 모든 사람은 平等하기 때문이다. … 임금과 신하라 해서 손발과耳目이 더 길거나 많지 않고 서민이라고 해서 손발과 이목이 더 짧지 않다. 이로 보아 나라를 다스리는 법 역시 백성에게서 나와야 할 한 사람이 주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民衆의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모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國王을 公舉하게 된 기원이며 보좌하는 관원 역시 이런 것이다. … (歐美) 각국의 章程은 모두 대동소이하여 번거롭게 기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말한다면 權限을 나눈다는 것이다. 권한을 반드시 분산하는 것은 행하는데 유리하되 서로 어긋나지 않고, 유익하되 서로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조목에는 行權(행정권)·掌權(사법권)·議法(입법권)의 세 가지가 있다. … 서양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떤 나라를 가장 관대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하는가? 관대한 정치를 행하는 나라란 議事堂 의원이 큰 권한을 잡아 士·農·工·商으로 하여금 모두 선거인의 지위를 나누어 갖게 하는 것이다.⁴⁷⁾

위 기사 인용문에는 『民主主義와 각국의 章程 및 公議堂에 대한 譯解』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 한성순보의 기사는 민주주

46) 漢城旬報 제20호 甲申 4월11일(*양력 1884년 5월 5일) 앞의 영인본, 393면.

47) 漢城旬報 제11호 甲申 1월11일(*양력 1884년 2월 7일) 영인본, 194~195면.

의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主權在民’의 원칙을 먼저 설명한 뒤에, 三權分立과 평등한 선거권 등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홍보가 어떤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갑신정변으로 폐간된 한성순보가 여론의 압력에 의해 새롭게 한성주보로 태어났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곧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등 개화신문이 ‘여론을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로도 해석되는데, 1897년 이후 활발히 전개된 독립협회의 萬民共同會 운동은 바로 이 같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통한 계몽활동이 그 밑거름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 刑政 인식과 刑事法 개정론

漢城旬報에는 법률의 형태와 刑法의 취지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西洋人이 말하기를, “法律이란 天理에 근본하고 人道에 합당하며 仁愛에 기준을 두고 公平을 이루어, 이로써 良民을 보호하고 凶徒를 징벌한다”고 하였다. 진실로 憲法을 맡은 자에게 生殺與奪의 도구와 또한 국가의 治亂得失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 대저 世運의 변화에 따라 法律도 또한 변화한 때문에 법률도 3등으로 나뉘니, 이른바 不文律, 成文律, 純全律 등속이다. … 근일의 泰西諸國은 이미 成文의 영역에서 벗어나 점점 純全之域에 들어가고 있는데, 유독 東洋의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법률은 成文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다. 대개 法條文이 너무 까다롭고 형벌이 너무 가혹하여 그 벌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하는 까닭에 執法者가 한 마디 말로 죄를 주면 傍人은 감히 그 사이에서 可否를 말할 수가 없다.⁴⁸⁾

법률의 기본은 양민을 보호하는데 있으나, 동양의 여러 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여 현실의 법은 백성에게 가혹하고 까다로움을 면치 못한다고 하여, 구래의 朝鮮法律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좀더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질박하고 고루한 民俗이 수백년 동안 계속되어 儉儉가 습성이 되었다. 지금 조정에서 變革에 뜻을 세웠으나 禁畧을 고치지 않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하고 있으니, 振興하는 모든 일을 民間에서 요구한다면 온 나라 안에 일어나서 호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⁴⁹⁾

위 인용은 개화정책에 시비를 거는 조정의 수구파 대신들을 겨냥한 대담한

48) 漢城旬報 제7호, 癸未 12월11일(*양력 1883년 12월 29일) 영인본, 116면.

49) 漢城旬報 제24호 甲申 5월21일(*양력 1884년 6월 14일) 영인본, 459면.

비판논설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의식에 입각해서 한성순보는 서구적 법률의 관대함을 홍보하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형사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서양) 법률가의 말에 “차라리 백 사람의 有罪를 놓아줄지언정 한 사람의 無辜를 죽일 수는 없다”고 하고 또 “罪는 가벼운가를 살피고 賞은 厚重한가를 살피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행사에 맞고, 仁愛를 다하여 그 公平을 붙드는 것이요, … 더욱이 死刑에 있어서는 여러 방향으로 詰嚴하고 진정으로 법을 구하여 생명을 구제할 근거를 생각하되, 罪가 너무 크고 惡이 너무 심하여 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연후에 刑을 내린다. … 어떤 사람은 “泰西의 형법이 너무 너그러워서 거느리질 못하여, 혹 不良한 무리라도 요행히 罪科를 피하여 다시 暴戾를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執法자가 天地와 같은 도량과 日月과 같은 밝음이 있지 않는 한 刑과 情과 法이 參差하여 難質하는 마당에서 어찌 능히 그옥한 것을 밝혀내고 숨은 것을 살피서 반드시 죄없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을 無辜에 빠트린 것과 罪人을 놓아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 현금의 日本은 泰西의 법을 근거로 하여 그 輕重을 절충하고 그 原委를 窮覈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어 法廷을 分設하였다. … 그러나 罪科가 정해지지 않으면 無罪인과 同一視하여 감히 拷杖苛責을 勒加할 수 없고 만일 무죄자가 잠시 拘留를 당하게 되면, 衣食과 居處는 관으로부터 넉넉하게 보급받는다. 그 審案에 있어서는 반드시 辯護人을 두어 백방으로 辦理하여 罪科가 중하지 않도록 힘써 도모한다. … 무릇 죄인을 심판할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방청을 허락하고 그 命罪에 미쳐서는 판사와 검사 등이 모두 陪席한 가운데 극히 公明正大함을 요구한다. 이상은 일본의 법률을 略述한 것인데, 대개 純全法律의 類이다.⁵⁰⁾

이상에서 한성순보의 저자는 刑事被疑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無罪推定原則을 고수하며 규류기간 중의 관급제도, 변호인 제도와 공개심리 원칙 등 西歐法制의 장점을 들면서 최근의 일본이 바로 이러한 법제를 수용하여 선진국의 純全法律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은근히 일본의 서구법제 수용에 대한 지지와 부러움을 나타내었다.⁵¹⁾ 이처럼 한성순보가 서구법제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그것을 도입한 사례를 대중들에게 홍보한 것은 조선도 하루 속히 서구의 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시적인 촉구였다.

한성순보에는 이밖에도 聽訟法[소송법] 및 國際法[만국공법]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촉구하는 기사도 있고⁵²⁾ 出版權과 獄內學校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50) 漢城旬報 제7호, 癸未 12월11일(*양력 1883년 12월 29일) 영인본, 117면.

51) 물론 같은 한성순보 동일자에는 일본이 서구와 달리 12인 陪席制度를 수용하지 않았고, 私罪를 범한 자가 능히 천황에게 哀訴할 수 없게 한 것은 일본의 법률이 泰西의 법률에 미치지 못한 점이라고 하여 일본식 서구법제 수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위 한성순보 동일자.

52) 漢城旬報 제10호 甲申 1월3일(*양력 1884년 1월 30일) 영인본, 169~170면.

등⁵³⁾ 각종 서구적 법률지식의 소개와 홍보에 힘썼다. 이러한 언론계몽 활동의 결과는 일정한 시일이 지난 뒤에 마침내 제도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근대적 의미의 법률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공표된 監獄規則(1894년 11월 25일) 등은 未決囚와 既決囚를 구분하면서 일시 구류자의 의복을 官給하는 등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위생과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니,⁵⁴⁾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1881년 조사 嚴世永이 보고한 바 1882년부터 시행된 명치일본의 감옥규칙 및 한성순보에 게재된 감옥 및 형사피의자 처우의 원칙, 옥내학교의 개설 등과 동일한 맥락으로 확인된다.⁵⁵⁾

IV. 맺음말

앞에서 필자는 18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개화파 인사들의 明治日本 視察의 경험들이 결국 귀국 후 창간되는 漢城旬報의 기사와 논설로 이어지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러면서 갑신개화당으로 불리는 이들 급진개화파 인사들의 저술 및 언론활동이, 비록 舊來의 祖宗成憲을 변혁하여 西歐法制의 도입을 그 골자로 하는 본격적인 立法活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독자층을 형성하는 都下·近京의 지식인 대중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군·현 단위 지식인 관료들까지 계몽하여 조선 舊章의 개혁 및 서구법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1890년대 초반의 갑오경장시 법제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輿論의 底流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실린 서구식 감옥제도와 형사소송제도 등의 내용은 실제로 갑오경장시 입법활동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인적 연계성’(人的連繫性)의 차원에서도 일부 검증된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실무 편집인이었던 장박·오용묵·현영운 등은 구한말의 입법활동에도 직접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80년대의 渡日見聞을 가

53) 漢城旬報 제15호 甲申 2월21일(*양력 1884년 3월 18일) 영인본, 283~284면.

54)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126~128면.

55) 구체적으로 1894년 1월 25일에 반포된 監獄規則의 제1조(未決監과 既決監의 구분)는 1881년 조사 엄세영이 고종 임금에게 귀국후 보고한 『日本司法省視察記 五』(*監獄則, 奎 3703-5, 국학자료원 영인본 제4권)의 ‘興造十二條’ 속에 제2, 제3항과 동일하며, 감옥규칙 제17조(병자간호)는 ‘홍조십이조’ 중의 제9조 病監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진 개화세력이 갑신정변에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화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갑신정변 후에 폐지되었다가 1886년 다시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여 창설된 漢城周報의 기사 논조로도 나타났다. 周報에는 旬報에 많이 보이던 미국, 유럽 등의 共和政治나 議會制度 등 서구의 앞선 정치제도에 관한 언급이 아주 드물게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대신에 주로 선진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면이 늘어나는 등 기사 내용상의 일정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갑신정변이 실패한 1880년대 후반부터 갑오경장이 실시되는 18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조선의 이른바 급진 개화파는 간간히 그들의 저술활동이나 상소문을 통해서 조선 구래의 법제에 대한 漢城旬報式 비판이나 서구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만약 조선사회가 좀더 일찍 자주적으로 법제를 근대화하여 부국자강을 이룩하였다더라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민족적 불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880년대 전반에 활동하였던 조사시찰단이나 한성순보의 발간에 간여하였던 개화파 인물들의 법사상이 어떻게 갑오개혁 이후의 법제개혁으로 연결되었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앞으로 양자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찾아 보고 제시해야할 것이다.

The Understanding of the Euro-American Legal System by the Enlightened Officers “Josa-sichaldan”(朝士視察團) and the Early Enlightenment Movement in 1880s

Won, Jae-Yeon*

I discussed in this paper that the information of the modernized Japan through the “Josa-sichaldan” in 1881 brought to the founding of enlightened newspaper “Hanseong-soonbo”(漢城旬報), and I discovered the fact that the writers of the newspaper became to the legislators of modern laws after the reform in 1894. The leading group of the newspaper was the Enlightening Party(開化黨), including the officers such as Kim Ok-gyun(金玉筠), Park Yeong-hyo(朴泳孝), etc. But the time of lasting the newspaper was so short that the aim of reforming the political and legal system was not come true,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Enlightening Party’s revolution in 1884. In spite of the failure, the preparation of reforming the political and legal system was partially to be accomplished by the newspaper. The Newspaper “Hanseong-soonbo” adopted the opinion of the leader Kim Ok-gyun and reported his article about the total administrative reform containing the police, the road, the legal system and so on. And the Newspaper reported the development of Euro-American society, and the readers have the affirmative opinions of the society. There are lots of the articles about the democratic system and capitalism as well as the progress in the field of science, technology, industry and so forth in the newspaper. This knowledge of the moder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 through the enlightened newspaper had made the basis of the reform in 1894 “Gabo-Gaehyeog(甲午改革)” and of the successive reforms. The writer of the newspaper “Hanseong-soonbo” and “Hanseong-joobo” such as Jang Bag(張博), Oh yong-mook(吳容默) and Hyeon Yeong-un(玄暎運) participated the construction of the modern legal system after the year of 1894.

* Post-doct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K21 law, Ph. D in literature